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45 발의연월일: 2021. 1. 21.

발 의 자: 송언석 · 구자근 · 김은혜

곽상도 • 김정재 • 박덕흠

추경호 · 허은아 · 임이자

권명호 · 김용판 · 태영호

정희용 · 김성원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.

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,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,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·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발생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'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'을 충족하는 곳(지역)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 요건을 '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'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'을 충족하는 곳(지역)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). 법률 제 호

#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 중 "국토교통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한다.

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국토교통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	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
해제) ① (생 략)	해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	②
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	
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	
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	
약경쟁률·주택가격·주택보급률	
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	
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	
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	
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	
지역 중 <u>국토교통부령</u> 으로 정	<u>대통령령</u>
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	
야 한다.	<del>-</del> .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63조의2(조정대상지역의 지정	제63조의2(조정대상지역의 지정
및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	및 해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지역으로서 <u>국토교통부</u>	<u>대통령령</u>
<u>령</u>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	
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	
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	
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	

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	경
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	상
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	을
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	위
로 한다.	

- 1. 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1 . 9 (청체코 가 )

- 1.•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